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건설공사 실적 증명시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민간발주자로부터 증명서 발급에 따른 소요기간이 과다하여 건설사업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국세청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로 갈음하도록 하는 한편, 직접시공 활성화를 위해 직접시공 실적가산 확대 및 신인도 항목을 간소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2항제1호가목 중 “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”을 각각 “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(1) 및 (2) 외의 부분 중 “서류”를 “서류.”로 하며, 같은 목 각 세세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금액이 5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(2)의 서류

제22조제2항제2호 본문 중 “증명서”를 “증명서(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별표 1 제1호 가목(4) 전단 중 “100분의 10에”를 “100분의 20에”로 하며, 같은 (4)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.

별표 1 제1호 라목(7)을 삭제하고, 같은 목 (11) 중 “2에 해당하는”을 “30에 해당하는”으로 한다.

별표 2 제1호 가목(2) 전단 중 “100분의 10에”를 “100분의 20에”로 하며, 같은 (2)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.

별표 2 제1호라목(6)을 삭제하고, 같은 목 (9) 중 “2에 해당하는”을 “30에 해당하는”으로 한다.

별표 6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“건설업체”를 각각 “건설사업자”로 하고, 같은 표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소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·시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0.5점을 가산한다.

별표 6 제4호 표 외의 부분 중 “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”를 “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”로 한다.

별지 제18호서식 중 “320:상가·백화점·쇼핑센터”를 “320:상가·백화점·쇼핑센터”로 한다.

별지 제20호서식 중 “320:상가·백화점·쇼핑센터”를 “320:상가·백화점·쇼핑센터”로 한다.

별지 제22호의3서식 뒤쪽 기호(·) 중 “·상가·백화점·쇼핑센터”를 “·상가·백화점·쇼핑센터”로 하고, 같은 뒤쪽 제17항 중 “일괄지불방식, 공사비비율방식”을 “일괄지급방식, 공사비비율방식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) 제22조제2항,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1년 8월 1일 이후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2조(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해야 한다. 다만,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. 1. 건설공사기성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.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 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발주한 기관이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(<u>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하여</u>	제22조(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----- ----- 가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----- -----

----- . -----

---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
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--

나. -----

----- 서
류. 다만, 도급받은 건설공
사와 하도급공사의 금액이
5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
(2)의 서류

(1) · (2) (현행과 같음)

다. ~ 바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명하는 서류: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 <u>증명서</u>. 다만,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 는 영 제30조의2제6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법 제28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 한 경우는 제외한다.	----- ----- ----- <u>증명서</u> <u>(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2호</u> <u>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발</u> <u>행한 경우를 포함한다).</u> 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3. ~ 5. (생 략)	3. ~ 5. (현행과 같음)